

酪農의 問題点

農水產部 金 炫

우리나라의 酪農은 1902年當時 農商工部의 技士로 근무하던 불란서 Shortl 씨가 現在의 新村역 부근에 모범적인 畜舍와 施設을 갖추고 젖소 20頭를導入하여 飼育하였던 것이 우리나라 酪農業의 시작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젖소 飼育頭數는 1944年에 2,661頭로 가장 많은 頭數를 飼育하였으나 解放後의 混亂期와 6.25動亂으로 1954年에는 269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2年에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樹立함과 동시에 每年 1,000頭의 젖소를 外國에서 導入도록하는 酪農獎勵 5個年計劃을樹立하여 推進한結果에 따라 젖소의 飼育數는 增加되었다.

表1. 年度別 飼育頭數 (單位:頭)

| 区分 | 62 | 63 | 64 | 65 | 66 |
|------|-------|-------|-------|-------|-------|
| 輸入頭數 | 1,085 | 271 | 905 | 600 | 826 |
| 年末頭數 | 2,406 | 3,538 | 5,199 | 6,612 | 8,471 |

60年代는 우리나라의 酪農基盤을造成하기 위하여 젖소飼育頭數增殖에 力点을 두었으며, 輸入이 自由化 되었던 煉乳의 輸入을 制限하였으며, 一般福祉事業用과 兒童給食을 위하여 PL480 #2로 導入되는 粉乳도 輸入을 中斷함에 따라 國內 酪農業은持続적으로 發展되었으며, 이에따른 地域의 酪農發展을 위해서 70年代에는 새마을 酪農團地를造成하고 이에따라 乳加工場의 施設이 拡張되었고, 젖소의 飼育頭數도 增加되었고 20余年이 지난 1981年을 基準으로 젖소飼育頭數는 19萬4千頭로增加하여 戶當飼育規模도 10.7頭로副業의 規模에서 脫皮하였고 乳處理能力은 43個所에 1日處理能力이 1,524ton이며, 乳加工能力은 25個所에 1日 876ton으로 年間總處理能力은 875.9千ton으로 成長하였고, 国民 1人當 牛乳消費量도 1962年 101g에서 14.403g으로增加하였

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 酪農業이 处하고 있는 몇가지의 問題点에 對하여 檢討하는 뜻에서 記述코자 한다.

1. 원유가격의 결정

원유가격은 1964年부터 1972年까지는 서울牛乳組合에 納乳하는 価格에 準하았으며, 1973年부터 酪農振興法 第13條의 規程에 의거 酪農審議會의 審議結果에 의거 価格이 決定되었으며, 1977年부터 現在까지 原乳基準價格은 乳脂率 3.4%를 基準으로 하고 乳脂率 0.1%差에 따라서 原乳價格을 加減하고 있다. 現在 原乳價格의 決定은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関한 法律 第4條 第2項의 規程에 의거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決定토록 되어 있으며, 原乳價格은 乳脂率 3.4%를 基準하여 kg당 313원이며 乳脂率 0.1% 増減時 7.0% 원씩을 増減하고 2.9% 以下是 0.1% 当 20원씩을 減하고 4.0% 以上은 4.0%에 準用토록 되어 있다.

〈問題点〉

가. 原乳價格이 乳脂率에 依하여 決定되므로 加水現象이 야기된다. 따라서 原乳의 品質이 低下되고, 一部 地域에서는 乳脂率의 檢查結果에 대하여 興상 集乳하는 業체와 酪農家間에는 서로 민지 못하고 分爭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나. 市乳, 粉乳等 乳製品의 価格構成을 보면 原乳投入量에 따른 單價基準은 乳脂率 3.5%로 認定함에 따라 農家の 原乳價格 基準인 乳脂率 3.4%와 比較時 問題点을 내포하고 있다.

다. 畜產物加工處理法의 市乳(음료에 공할 목적으로 원유를 살균처리한 것)의 檢查基準에는 乳脂肪分 含量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어 農家에 支給하는 原乳價格 基準인 3.4%와 또한 比較가 되지 않을 수 없다.

2. 原乳価格의 差等制 実施

現在 原乳価格의 決定은 乳脂率에 의거 決定되므로 差等制를 実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畜産物加工處理의 規程에 依하면 細菌数 試験(直接検査法에 의한 경우)에 의거 1ml 당 400만 이하인 경우는 1級이며 1ml 당 400만 초과인 경우는 2級으로 規程되었으며 메칠렌부루 還元試験에 의거 2時間 以後 還元이 되는 경우 1級이며 2時間 以内 還元이 되는 경우 2級으로 規程되어 있다.

서울牛乳組合에서 지난 80년 10월부터 81년 9월 까지 납유하는 목장을 대상으로 메칠렌부루 환원시험을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2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에 规定한 等級基準은 年平均 總檢査 牧場數 3,728 個所中 I級이 1,844個所

로 49%에 達하는 反面에 II級이 1,884個所로 51%에 達하며 季節別로 보면, 여름철에 II級이 1,423個所로 65%을 차지하고 봄철에는 255個所로 39%, 가을철은 131個所로 26%, 겨울철은 75個所로 18%를 나타내고 있다. 月別로는 7 월이 2級 77%로 가장 多量했고 1 월이 19%로 가장 양호했다.

〈問題点〉

가. 酪農家の 不信이 高調될 우려가 있다. 現在 乳脂率에 依한 価格決定에 따라 不信을 하고 있는 狀態에서 試験室에서 細菌数 試験에 依한 方法이나 메칠렌 부루 還元試験에 의거 2級乳과 判定을 받았을 때 믿을 수 있는 与件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問題点을 内包하고 있는 것이다.

表2. 等級基準表

| 法定等級 | 還元時間 | 推定細菌數/ml | 自體等級 | 還元時間 | 推定細菌數/ml |
|------|-------|----------|------|---------|--------------|
| 1級 | 2時間以後 | 400만 이하 | A | 5½時間以上 | 50만 이하 |
| | | | B | 5½~3½시간 | 50만~300만 |
| | | | C | 3½~2시간 | 300만~400만 |
| 2級 | 2時間以内 | 400만 이상 | D | 2~1시간 | 400만~1,000만 |
| | | | E | 1~½시간 | 1,000~2,000만 |
| | | | F | ½시간以下 | 2,000만 이상 |

表3. 季節別調查結果

| 季節 | 等級 牧場数 | 検査 牧場数 | I | | | | II | | | |
|------------------|-----------|-----------|-----|-----|-----|-----|-----|-----|-----|-------|
| | | | A | B | C | 計 | D | E | F | 計 |
| 봄 (3.4.5월) | 목장수 | 655 | 100 | 143 | 157 | 400 | 173 | 78 | 4 | 255 |
| | 비율(%) | 100 | 15 | 22 | 24 | 61 | 26 | 12 | 1 | 39 |
| 여름 (6.7.8월) | 목장수 | 2,176 | 88 | 232 | 433 | 753 | 533 | 637 | 253 | 1,423 |
| | 비율(%) | 100 | 4 | 11 | 20 | 35 | 24 | 29 | 12 | 65 |
| 가을 (9.10.11월) | 목장수 | 491 | 50 | 204 | 106 | 360 | 95 | 20 | 16 | 131 |
| | 비율(%) | 100 | 10 | 42 | 22 | 74 | 19 | 4 | 3 | 26 |
| 겨울 (12.1.2월) | 목장수 | 406 | 70 | 148 | 113 | 331 | 45 | 22 | 8 | 75 |
| | 비율(%) | 100 | 17 | 36 | 28 | 82 | 11 | 5 | 2 | 18 |

나. 乳製品価格의 影響

1級乳와 2級乳의 分布比率에 따라 다르겠지만 製品에 따른 価格差를 어떻게 할것인가. 다시 말해 1級乳는 무슨 製品의 原料로 利用하고 2級乳는 무슨 製品의 原料로 利用할것인가에 따라 製品에 미치는 価格을 어떻게 調和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問題点이 内包되고 있다.

3. 牛乳検査制度

現在 奮產物加工處理法 規程에 의하면 原乳検査는 管能検査 比重検査 알률検査(또는 pH検査)는 各 牧場의 輸送管別로 受乳時 検査하도록 되어 있으며, 침사検査 適正酸度検査 메칠렌부루還元検査 細菌検査 細菌發育抑制物検査 成分検査 및 기타 必要한 検査은 検査項目別로 必要한 期間을 정하여 定期的으로 實施하되 메칠렌부루還元検査은 牧場別로 15日에 1回以上 實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原牛乳(搾乳된 그대로의 것)의 検査基準은 細菌數検査 메칠렌부루還元検査이외에 침사検査은 2.0mg이하, 比重은 15°C에서 1,028 내지 1,034, 酸度는 저지種은 0.20%이하 기타 젓소는 0.18%이하로 되어 있다.

〈問題点〉

乳製品 消費가 鈍化됨에 따라 原乳供給이 과잉되는 경우에는 酸敗率 発生頻度가 높고 乳脂率이 떨어지는가 하면 反対로 原乳가 不足되는 경우에는 이와 反対되는 現象이 나타나 酪農家の 불만요인이고 있는 것도 問題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酪農業은 先進國에 比하여 아직도 未治한 実情이며 특히 原乳代의 決定에 따라 乳脂率의 變動 酸敗率 発生頻度 高調等으로 야기되는 農家の 불만을 해소하고 원만한 原乳의 流通体系를 定立하여 서로 믿고 納乳 또는 受乳를 할 수 있는 方案을 더욱 檢討코자 한다.

미국 FDA/PHS의 “A급” 우유표준 (1978년개정)

| 항 목 | 살균용 “A급”생유 | 항 목 | “A급” 살균유 및 유제품 |
|-------|--|-------------|--|
| 온 도 | 착유후 2시간 내에 7°C 또는 그 이하로 냉각하고 후에 착유한 우유를 혼합하여도 10°C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온 도 | 7°C 또는 그 이하로 냉각하여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할 것. |
| 박테리아수 | 개별농가의 우유는 다른 농가의 우유와 혼합되기전에 ml당 100,0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살균전에 혼합된 우유는 ml당 300,0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박테리아수 | ml당 20,000이하 |
| 항생물질 | 개별농가의 우유는 <i>Bacillus subtilis</i> 검사법이나 유사방법에 의하여 억제환이 보이지 않을 것. | 대장균수 | ml당 10개 이하, 대량탱크수송 시에는 ml당 100개 이하. |
| | 혼합우유는 <i>Sarcina lutea cylinderplate</i> 검사법이나 유사방법에 의하여 억제환이 보이지 않을 것. | Phosphatase | Scharer 신속검사법이나 유사방법에 의하여 ml당 1 microgram 이하. |
| 백혈구수 | 개별농가의 우유는 ml당 1,500,0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항생물질 | <i>Sarcina lutea cylinderplate</i> 방법이나 유사방법에 의하여 억제환이 보이지 않을 것. |

Grade A Milk Ordinance, 1978. U. S., public Health Service.